

의안번호	2220201
의 퇴 인	이학영의원
회 답 일	2026.8.11.
추계번호	26B3774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의2 (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 등)	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취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(제1항) 1. 잔류성오염물질 2.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 또는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에서 선별기준이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스톡홀름협약에 등재하기 위하여 제안한 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물질(이하 “후보물질”이라 한다) 제1항·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,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(제4항)	재량규정 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13조의2 (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 등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취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취급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실태조사는 시행하고 있지 않음

- 다만,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암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성이 높고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를 위한 예산은 2026년 기준 18억 400만원임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, 잔류성오염물질 등의 취급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신규로 추진될 수 있으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실태조사의 대상·범위·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,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항들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는 실태조사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개요 및 대상물질 확대

(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)

□ 제도 취지 및 대상

- (취지) 발암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(30인 이상)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저감계획을 제출받아 공개하는 제도
- (대상물질) 다량 배출물질 중 유해성이 높고, 기술적으로 저감 가능한 화학물질 단계적 확대* 추진

* 벤젠 등 9종('20년) → 포름알데히드 등 53종('25년) → 배출량조사 대상 전체 415종('30년)

※ (9종) 트리클로로에틸렌, 벤젠, 염화비닐, 1,3-부타디엔, 디클로로메탄, N,N-디메틸포름아미드, 테트라클로로에틸렌, 아크릴로니트릴, 클로로포름

□ 제도 이행 절차

- (작성·제출) 사업장은 대상 물질의 취급량, 배출량, 저감방안 및 저감목표(5년간) 등 저감계획서 제출(→안전원, ~4.30.)
- (접수·검토) 저감계획서의 정확성, 적정성 등을 검토(안전원, 60일 이내)
- (공개) 지자체는 환경부(안전원)로부터 검토를 마친 저감계획서를 제공받아 지역사회에 공개*

* (내용) 사업장의 일반정보(업체명, 업종), 대상 물질, 배출현황, 저감계획(연도별 저감목표 등) 등을 공개

(방법) ①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, ② 관할 시청·구청·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, ③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

- (이행확인)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(환경청) 및 배출저감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이행실태 공유

- 배출저감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이행 원인 등 장애요인 분석, 대안 제시 등 기술지원 실시(안전원, 지역전문가)
- 배출저감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것인 만큼, 저감목표 미달시라도 행정조치는 없음